

주식등록 서비스 도입 취지 및 효과



실물증권의 발행·보관·유통에 따른
사회적 비용 절감



실물증권 관련 사고(분실·도난·위조·변조)
방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



전자적 방식의 증권 보유·거래로
증권시장 투명성 증대



국제 적합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
국제경쟁력 강화
*OECD 국가 37개 중 35개국이 도입한
선진 자본시장 제도



주식등록 서비스 안내

www.ksd.or.kr

- 서비스안내
- ▼ 발행시장지원
- ▼ 발행등록
- ▼ 주식등록

심의조정필(리스크-1603, 2020.07.17.)

주식등록 서비스 문의처

Tel. 02-3774-3026~8
Fax. 02-3774-3587

주식등록 서비스



Stock Registration Service



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주식등을
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권리의
발생·변경·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전자적
방식으로 등록(발행)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주식등록 서비스 연혁



상법 개정 및 주식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)
제정(2016.3.22.)



전자등록기관 허가(2016.9.22.)



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(2019.6.25.)



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식등록
서비스 개시(2019.9.16.)



주식등록 대상 증권

주식, 신주인수권증서, KDR(증권예탁증권)

* 주식등록 서비스 참가 발행인은 종류주식(우선주 등)을 포함한
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여야
하며, 실물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.

1 서비스 참가자

● **발행인** : 주식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법인

주식등록 서비스 참가 자격	
정관 개정	주식등의 실물발행 근거조항 삭제 및 전자증권 반영
발행대리인 선임	미선임 시, 신규 전자등록 불가 (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)
발행인관리계좌 개설	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서 제출 www.ksd.or.kr → 양식/서식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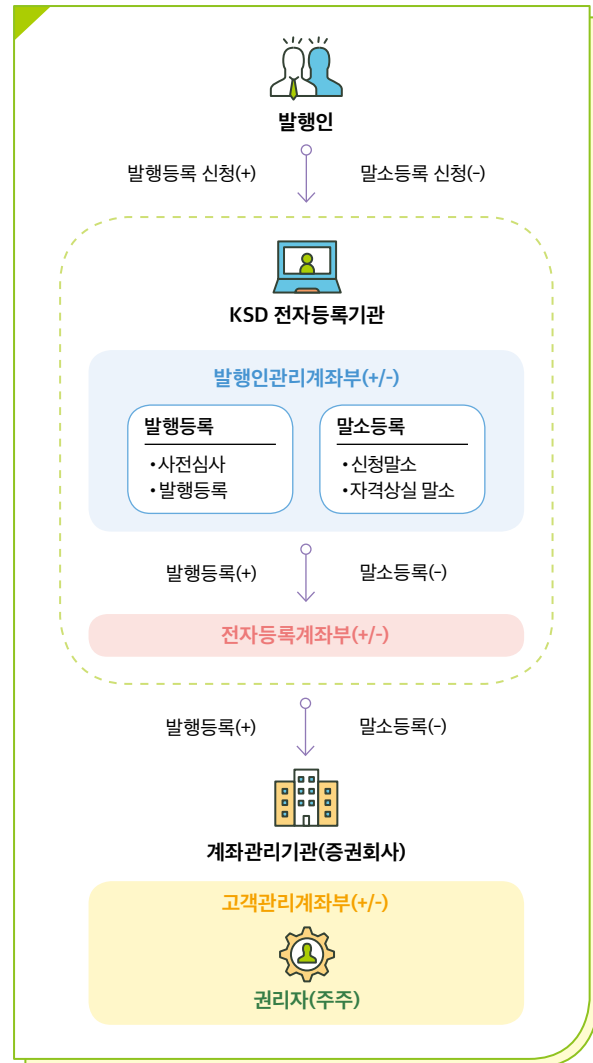
● **발행대리인(명의개서대행회사)** : 발행인의 주식 발행 관련 사무를 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명의개서대행회사
 • 한국예탁결제원, 국민은행, 하나은행

● **전자등록기관** :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 • 한국예탁결제원

● **계좌관리기관** : 전자증권 주식등을 인수하는 권리자의 위탁을 받아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기관
 • 증권회사

2 주식등록의 구조

발행인이 신청한 주식등의 발행·말소에 관한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고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고객계좌부에 등록되면, 권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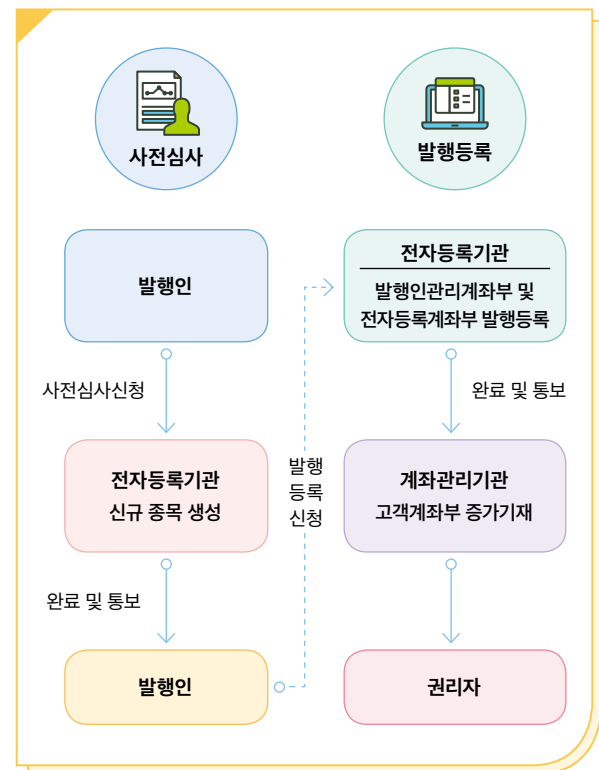
계좌부의 종류	관리주체	개요
발행인관리계좌부	전자등록기관 (KSD)	전자증권의 종목별 총 수량·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발행인이 개설한 장부
전자등록계좌부	전자등록기관 (KSD)	전자증권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
고객계좌부	계좌관리기관 (증권사)	권리자(주주)가 위탁한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장부

3 발행등록 절차

● **사전심사** : 종목별로 최초 1회 전자등록할 종목에 대한 발행정보를 심사하여 종목 등록

● **발행등록** : 사전심사를 완료한 종목을 대상으로, 발행할 주식 수량과 그 주식이 등록될 계좌정보를 심사하여 계좌부등록

주식 발행등록 수수료
 종목별 신청 건별 발행 주식수 1,000주당 300원 (최저 4천원 ~ 최고 50만원)
 * 단, 비상장법인은 면제(2024년까지)



4 말소등록 절차

● **발행인 신청말소** : 주식소각, 법원판결에 의한 계좌부 부분 말소

● **전자증권등록해지(발행인 자격상실 말소)** : 발행인의 해산·청산, 실물주권 전환, 법원판결에 따른 계좌부전량말소

